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10일, 강득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26.04.0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04.15.)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0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6.05.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득구의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제도 도입 등

개정안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 중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설을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로 정의하고, ②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재인정 절차, 인정서 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통지 의무 및 최대 36개월의 수입 허가 기간 부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③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인정 취소 근거와 결격 사유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u>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u> <u>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u>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때에는 6년의 범위에서 정한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 유효기간,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수입 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

	<u>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하 “바젤 협약”이라 함)」은 선진국이 자국의 엄격한 환경 규제를 회피하여 유해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밀수출·매각하면서 야기된 국제적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저개발국의 환경권 보장 및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¹⁾하고자 1989년 체결(1992. 5.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바젤 협약」의 국내 이행²⁾을 위해 현행법을 제정(1992. 12.)하고, 1994년 2월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음.

「바젤 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유해 폐기물 수출 시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Prior Informed Consent) 확보 의무화, ② 규제 대상 폐

1)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관련 법령 및 바젤협약 업무편람”, 2008. p.203 참조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물의 운송 시 최대 12개월간 유효한 서면 동의 절차 명시, ③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 및 비당사국 간 별도의 양자·다자·지역 협정 체결 허용 등임.

【 「바젤 협약」 주요내용 】

구분	내용
규제대상 폐기물 (제1조)	• (유해폐기물) 부속서1에 규정된 폐기물(45종)로서 부속서3에 규정된 유해특성을 가진 것 또는 수출·수입국의 국내법이 유해폐기물로 규정한 폐기물 • (기타폐기물) 부속서2 규정 폐기물(가정폐기물, 혼합 플라스틱폐기물, 전자폐기물)
당사국 의무 (제3, 4조)	• 당사국은 본 협약 부속서 외 자국법에 따른 폐기물에 대한 결정 사항 및 변동사항을 사무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 당사국은 △유해폐기물 수입금지를 선언한 나라에 대한 수출금지, △유해폐기물 <u>수출 시 수입국으로부터 서면동의 확보</u>, △유해폐기물 처리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대한 수출 금지
이동절차 (제6, 8조)	• 유해폐기물은 △수출국이 처리기술, 장소 등을 갖추지 못한 때, △수입국이 재이용 또는 재생산업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수입국의 기후 등 조건이 수출국에서의 처리보다 환경상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 간 이동절차에 따름 • 수출국은 이동에 관련되는 국가(수입구·경유국)의 주무기관에 문서로써 통지하고, 서면동의(60일 이내)를 받은 후 이동 시작 • 서면동이는 <u>최대 12개월동안 규제대상폐기물의 복수 운송에 포함 가능</u>
불법거래 조치 (제9조)	• 불법교역 폐기물은 수출국이 주관이 되어 자국으로 회수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이 협약에서 정한 방법대로 적정 처리할 것 • 불법교역자는 당해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 등 조치하고 관련 당사국은 상호 협조할 의무가 있음
양자, 다자 및 지역협정 체결 (제11조)	• 당사국은 협약의 목적에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당사국 간 또는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에 폐기물의 이동에 관한 협정 체결 가능</u>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바젤 협약」 제11조(양자, 다자 및 지역 협정 체결)에 근거하여 OECD 회원국들은 재활용 목적 폐기물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재생목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통제 규정³⁾(이하 “OECD 규정”이라 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바젤 협약」의 환경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회원국 간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임.

구체적으로 「OECD 규정」은 ① 폐기물을 유해성에 따라 ‘녹색(Green)’과 ‘황색(Amber)’ 목록으로 구분⁴⁾하여 차등화된 통제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② 녹색 목록 폐기물은 통상적인 상업 거래 시의 일반적 통제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⁵⁾으로 하고 있으며,

3) 「Decision of the Council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Destined for Recovery Operations」 [OECD/LEGAL/0266]

4) 「Decision of the Council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Destined for Recovery Operations」 [OECD/LEGAL/0266]

CHAPTER II

B. GENERAL PROVISIONS

2. Control Procedures

A two-tiered system serves to delineate controls to be applied to such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a) Green Control Procedure:

Wastes falling under the Green control procedure are those wastes in Appendix 3 to this Decision. This Appendix has two parts:

b) Amber Control Procedure:

Wastes falling under the Amber control procedure are those wastes in Appendix 4 to this Decision. This Appendix has two parts:

(자료: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266>, 검색일: 2026. 3. 25.)

5) 「Decision of the Council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Destined for Recovery Operations」 [OECD/LEGAL/0266]

CHAPTER II

③ 특히 황색 목록 폐기물 중 수입국 당국이 기술 및 환경 관리 수준을 인정하여 OECD 사무국에 통보한 ‘사전동의시설(Pre-consented recovery facilities)’로 이동하는 경우(Case 2)에는 일반 시설(Case 1)보다 완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④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이의 제기 기간을 7영업일로 단축함과 동시에 포괄 수입 허가 기간을 최대 3년(3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⁶⁾하고 있음.

C. GREEN CONTROL PROCEDURE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subject to the Green control procedure shall be subject to all existing controls normally applied in commercial transactions.

(자료: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266>, 검색일: 2026. 3. 25.)

- 6) 「Decision of the Council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Destined for Recovery Operations」 [OECD/LEGAL/0266]

CHAPTER II

D. AMBER CONTROL PROCEDURE

- (2) Functioning of the Amber Control Procedure:

Procedures are provided under the Amber control procedure for the following two cases:

Case 1: individual transboundary movements or multiple shipments to a recovery facility;

Case 2: transboundary movements to pre-consented recovery facilities

Case 1: (생략)

Case 2: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to pre-consented recovery facilities

- a) Competent authorities having jurisdiction over specific recovery facilities in the country of import may decide not to raise objections concerning transboundary movements of certain types of wastes to a specific recovery facility (pre-consented recovery facility). Such decisions can be limited to a specified period of time and can be revoked at any time.
- b) Competent authorities that elect this option shall inform the OECD secretariat of the recovery facility name, address, technologies employed, waste types to which the pre-consent applies, and the period covered. The OECD secretariat must also be notified of any revocations.
- c) For all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to such facilities paragraphs (a), (b) and (c) of Case 1 shall apply.
- 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ies of export and transit shall have seven (7) working days to object, according to their domestic laws, to the proposed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이하 생략)
- e) Paragraphs (e), (f) and (g) of Case 1 shall apply with a period of seven (7) working days instead of thirty (30) days but for the exceptional cases mentioned in paragraph (d) above, in which case the period shall remain thirty (30) days.
- f) Paragraphs (h), (i), (j), (k) and (l) of Case 1 shall apply.
- g) In the case of the acceptance of a general notification, paragraph (m) of Case 1 shall

【「OECD 규정」 중 황색 목록 폐기물 일반절차 및 사전동의시설 절차 비교】

구 분	일반절차 (Case 1)	사전동의시설 절차 (Case 2)
검토·이의제기 기간	30일	7일(30일까지 연장 가능)
적용 시설	모든시설	사전동의된 회수시설
OECD 통보	불필요	필요 (시설명, 주소, 기술, 기간 등)
수입 허가 기간	최대 1년	최대 3년
철회 가능성	가능	가능

개정안은 「OECD 규정」상 ‘사전동의시설’을 현행법에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로 명문화하고 검증된 시설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수입 허가 기간 연장(36개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자원 순환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022년 6월 「바젤 협약」 개정(2025. 1. 1. 시행)에 따라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통제 대상(규제폐기물)으로 분류⁷⁾되어, 국가 간 이동시 사전 서면 동의(Prior Informed Consent) 등 한층 강화된 행정 절차 이행이 의무화되었음.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국제 규제 변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핵심

apply with the exception that the shipments can cover a period of up to three (3) years.
For the revocation of this acceptance, paragraph (n) in Case 1 shall apply.

(자료: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266>, 검색일: 2026. 3. 25.)

7) (중전) 유해한 폐전기·전자제품만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 → (개정) 유해성과 관계 없이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

원료 수급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내 재활용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자원 안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부정한 운영에 대한 인정 취소 및 결격사유 등 사후관리 체계는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그 내용과 체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 제10조의2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인정 유효기간의 경우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유사 인정제도⁸⁾의 경우 피인정자의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는바,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피인정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재활용업계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용 폐자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OECD의 사전동의회수시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 ①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인정기관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설 제도를 준용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2. 수출입관리폐기물 일괄 신고 유효기간 확대

개정안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12개월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조항 신설 및 조항 재배치를 반영하여 수출입 신고 수리의 취소 사유 등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u>

④ ~ ⑥ (생략)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 ~ 7. (생략) ② (생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 ----- ----- ----- 제3항 및 제4항-----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2제6항----- ----- ----- ----- ----- 4. 제18조의2제7항----- -----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수출입관리폐기물⁹⁾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

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의 관리가 필요하며 대통령령¹⁰⁾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하고, 현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25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음.

현행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¹¹⁾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특히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동일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괄 신고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제18조의7제1항¹²⁾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별표 2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옰니류, 광채류 등 25개 품목이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고시되어 있음.

1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1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료 미제출, 처리 기준 위반 또는 환경오염 유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으나,

거짓 신고, 명의 대여 및 행정 명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함.

개정안은 앞서 검토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우수재활용시설’ 수입 허가 기간(36개월) 도입과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일괄 신고 유효기간 범위도 동일하게 36개월로 규정하고 관련 취소 사유를 정비한 것으로, 이는 제도 간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의 수입 허용기간을 확대하여 폐자원의 순환경제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5. 수출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3. 폐기물 수출입 금지·제한 사유 추가

개정안은 ① 폐기물 수출입 금지·제한의 목적에 기존 ‘환경보전’ 외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을 추가하고, ② ‘폐기물의 국내 수급 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을 구체적인 금지·제한 사유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u>환경보전을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 ----- <u>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u>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9조제1항¹³⁾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①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최근 폐전자기기와 디지털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안보 및 산업 정보 보호차원에서 각종 디지털 설비를 보안 폐기하고 핵심 광물을 추출·재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¹⁴⁾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국들은 폐기물을 ‘단순 쓰레기’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여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구체적으로 유럽연합(EU)은 철강·구리 스크랩의 세관 감시를 강화하고 배터리 재활용 원료인 ‘블랙매스’를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여 비(非)-OECD 국가로의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내 자원 확보를 위해 구리 스크랩의 일정량을 국내에 우선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쿼터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음.

또한 중국은 폐자석 등 희토류 폐기물과 재생원료를 수출허가 대상

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14) 국회입법조사처, NARS Brief, “도시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보안 정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5. 4. 24. p.1 참조

에 포함시켜 전략 자원화하였고, 러시아 역시 안보를 명분으로 스테인리스 등 금속 스크랩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주요국 핵심 광물 및 금속 스크랩 수출 제한 현황 】

국가명	내용												
EU	■ 철강·금속 액션플랜('26.3 발표) - 철강·알루미늄·구리 스크랩 등 세관 감시 강화 - 블랙매스를 유해폐기물로 분류하여 비 OECD국가로의 수출 제한 ■ 폐기물 선적 규정('24.5 채택) - 비 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전면 금지('26.11~) ■ 배터리 규정('23.8 발표) - 배터리 유형별 회수율 목표 설정 <table><tr><th>금속류</th><th>납축전지</th><th>리튬 배터리</th><th>니켈-카드뮴 배터리</th></tr><tr><td>'25년</td><td>75%</td><td>65%</td><td>80%</td></tr><tr><td>'30년</td><td>80%</td><td>70%</td><td>-</td></tr></table>	금속류	납축전지	리튬 배터리	니켈-카드뮴 배터리	'25년	75%	65%	80%	'30년	80%	70%	-
금속류	납축전지	리튬 배터리	니켈-카드뮴 배터리										
'25년	75%	65%	80%										
'30년	80%	70%	-										
미국	■ 구리 스크랩 쿼터제('25.7.30 발표) - 구리 스크랩 일정량을 국내 판매하도록 행정명령 발표 ('27년 25% → '28년 30% → '29년 40%)												
중국	■ 희토류 수출허가제('25.4.4 발표) - 희토류 허가 대상에 폐기물(폐자석 등) 및 재생원료 포함												
러시아	■ 안보를 위한 대외경제활동 분야 특별 경제 조치('22.3~) - 금속 스크랩(스테인리스 및 합금강) 수출입 제한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러한 자원 안보 강화 흐름은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일례로,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핵심 원료로서 그 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나,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산 물량을 대량 선점하면서 국내 수급 불안이 심화¹⁵⁾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2026년 2월 ‘에너지 자립 추진을 위한 팜유 폐기물 수출 금지(Indonesia to ban palm oil waste exports to drive energy independence¹⁶⁾)’ 정책을 공식화하며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자원의 전략 자산화가 가속화되고 핵심 자원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수급 안정’과 ‘순환이용 촉진’을 수출입 제한의 사유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요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한 폐자원의 유출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폐영구자석 등 핵심 자원에 대한 한국금속 재활용산업협회 등 자원순환 산업계의 수출 규제 요청¹⁷⁾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15) 한국경제, “中 수출 막고 美는 수입 싹쓸이...‘SAF’ 원료 수급 비상”, 2025. 7. 18.

- 주요내용: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산 폐식용유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며 국내 가격이 50% 폭등하고 사상 첫 수출입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2027년 SAF 의무화 물량 확보(국제선 항공기용 항공유에 SAF 1% 이상 포함)에 차질이 예상되는 실정임.

16) 자료: <https://en.antaranews.com/news/402530/indonesia-to-ban-palm-oi-waste-exports-to-drive-energy-independence>, 2026. 2. 2, 검색일: 2026. 3. 25.

※ Antara News(인도네시아 국가 뉴스 통신사)

17) 자원순환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폐배터리 공급은 축소되는 반면 중국의 보조금 기반 고가 매입으로 인한 해외 유출은 증가하는 추세임.

4.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관리·감독 및 제재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인정·재인정을 받은 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② 해당 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며,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수출입 금지·제한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2조의3, 제23조 및 제2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u>

<u><신 설></u>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u>자</u>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u><신 설></u> 2. (생 략)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기물 <u>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것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u>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수료) ① ----- ----- ----- <u>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 ----- -----.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을 <u>수출하거나 수입한 자</u> 2.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출입하거나 처리하는 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¹⁸⁾하여야 하고,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련 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¹⁹⁾하여야 함.

또한, 현행법은 무허가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등 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과 원상회복 비용 부과²⁰⁾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²¹⁾에 처하는 등 엄격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의 원활한 시행 기반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수입한 자 또는 수출·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1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1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구축하기 위해 인정 신청 및 유지 단계에서의 행정적 관리 근거(수수료, 보고 의무 등)를 명확히 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제 안 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피인정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재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7항).
- 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안 제18조의2제4항 문장을 정리함(안 제18조의2제4항).
- 다. 형벌불소급 및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벌칙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안 부칙 제2조(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제3항 중 “6년의 범위에서 정한”을 “5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 유효기간,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18조의2제4항 중 “폐기물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에는”을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제2조(정의) ----- ----- -----. 1. ~ 5. (현행과 같 음) 6. “수입폐기물 우 수재 활용시설”이 란 수출입규제폐 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 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 이 우수하다고 제 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재 활용시설을 말한 다.	제2조(정의) ----- ----- -----. 1. ~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 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 기물 우수재활용시 설의 인정을 받으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 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
설에서 재활용할 폐
기물 등에 관한 서
류를 첨부하여 기후
에너지 환경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인정 신청의 대
상이 되는 수출입규
제폐기물은 기후에
너지 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
용 가치 등을 고려
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
성, 재무상태의 건
전성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인정기준
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
수재활용시설을 인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때
에는 6년의 범위에
서 정한 인정 유효
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 우수
재활용시설의 인정
을 받은 자가 제3항
에 따른 인정 유효
기간의 갱신 또는
인정받은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으로부터 재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

③ -----

-- 5년의 -----

-----.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다.

⑤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입
폐기물 우수재활용
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은 수입폐기
물 우수재활용시설
의 인정을 받은 자
가 인정받은 폐기물
을 경제협력개발기
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
구하고 36개월의 범
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⑦ -----

인정 및 재인정 절차

	<u>차, 인정 유효기간,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
<u><신 설></u>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3. 인정 또는 재인정
을 받은 이후에 제
10조의2제2항에 따
른 인정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부도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수입폐
기물 우수재활용시
설의 운영이 현저
히 어려운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
수재활용시설의 인
정을 신청할 수 없
다.

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u>이 경과되지 아니</u> <u>한 자</u> <u>2. 인정이 취소된 날</u> <u>부터 2년이 경과되</u> <u>지 아니한 자</u>	
제18조의2(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8조의2(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후에너지환경</u> <u>부장관이 국내 수요</u> <u>및 재활용 가치 등</u> <u>을 고려하여 폐기물</u> <u>의 원활한 수입을</u> <u>지원할 필요가 있</u> <u>다고 인정하여 고</u> <u>시한 수출입관리폐</u> <u>기물을 재활용하기</u> <u>위하여 수입하려는</u> <u>경우에는 제3항에</u> <u>도 불구하고 36개월</u> <u>의 범위에서 한꺼번</u> <u>에 신고할 수 있다.</u>	제18조의2(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u>고시한</u> <u>수출입관리폐기물</u> <u>을 재활용 목적으</u> <u>로 수입하려는 자</u> <u>는</u> ----- ----- ----- --.
④ ~ ⑥ (생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⑤ ~ ⑦ (개정안과 같음)

의나 상호를 사용	-----	
하여 수출입관리	-----	
폐기물을 수출 또	-----	
는 수입하게 하거	-----	
나 수출입관리폐	-----	
기물 수출신고증	-----	
명서 또는 수입신	-----	
고증명서를 빌려	-----	
주었을 때	--	
4. 제18조의2제6항	4. 제18조의2제7항-	
을 위반하여 수출	-----	
입 관리 폐 기 물 을	-----	
처리하였을 때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	
	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출입 금지)	제19조(수출입 금지)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	① -----	① ~ ④ (개정안과
부장관은 사람의 건	-----	같음)
강 보호와 <u>환경보전</u>	----- <u>환경보전</u>	
을 위하여 다음 각	<u>및 국내 발생 폐기</u>	
호의 어느 하나에	<u>물의 재활용과 순환</u>	
해당하는 긴급한 조	<u>이용 촉진 등</u> -----	
치가 필요한 사유가	-----	
발생하였을 때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기간 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3. 폐기물의 국내 수 급안정 및 순환이 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 음)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폐기 물의 수출 또는 수 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 게 하거나 자료를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 ----- ----- ----- ----- ----- ----- -----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 ④ (개정 안과 같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4. -----

----- 제5항 -----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제6조제1항 및 제 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 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u>제18조의2제</u> <u>4항</u> 에 따라 수출 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 을 수출·수입한 자 또는 수출·수 입한 것으로 의심 되는 자	6. ----- ----- ----- ----- <u>제18조의2</u> <u>제5항</u>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 리함으로써 얻은 부 적정처리이익(부적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 ----- ----- ----- ----- -----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 ③ (개 정안과 같음)

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u>의 부정한 방법으 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u>	
2.·3. (생 략)	2.·3. (현행과 같 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 음)	
제23조(수수료) ① 제 6조제1항에 따른 수 출허가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수수료) ① -- ----- ----- ----- 자 와 제10조의2에 따 라 수입폐기물 우수 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 려는 자는 ----- -----.	제23조(수수료)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 음)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8조(벌칙) ----- ----- ----- ----- -----.	제28조(벌칙) ----- ----- ----- ----- -----.

1. · 1의2. (생 략) <u><신 설></u> 2.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제19조를 위 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u> 2. (현행과 같음)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u> <u>제2조(벌칙에 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 는 제28조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 다.</u>	1. ~ 2. (개정안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6항”으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제6항”을 “제1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의2제4항”을 “제18조의2제5항”으로 한다.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제22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

제23조제1항 중 “자는”을 “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28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폐기

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30조제1호의3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u><신 설></u>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신 설>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

제18조의2(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생략)	<u>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u> <u>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u> <u>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u>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u> <u>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u>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제18조의2(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④ ~ ⑥ (생 략)

제18조의7(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신고·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8조의7(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

제3항 및 제4항-----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2제6항-----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 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 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 ----- ----- ----- -----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 을 때	4. 제18조의2제7항-----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 호와 <u>환경보전</u>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 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 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 ----- --- <u>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 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u>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u>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보고 · 검사 등) ① 기후에	제22조(보고 · 검사 등) ① -----

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5. (생략)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4. -----

----- 제5항 -----

5. (현행과 같음)

6. _____

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
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수
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
태에서 폐기물을 수출·수입
한 자 또는 수출·수입한 것
으로 의심되는 자

② ~ ④ (생략)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
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
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
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
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
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
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략)

----- 제18조의
2제5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

---.

---.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3. (생 략) ② 3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 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u>자는</u>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3 (생 략)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 략) <u><신 설></u> 2. (생 략)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 <u>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u> <u>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u> <u>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u> <u>폐기물을 수입한 자</u> 2. 3. (현행과 같음) ②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수료) ① ----- ----- ----- <u>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u> <u>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u> <u>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u> -----. ② 3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u>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u> <u>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u> <u>한 자</u> 2.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2. (생략)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생략)	----- ----- -----.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8조의2제6항----- ----- ----- ----- ----- ----- 2. (현행과 같음)
--	--